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近況

— WIPO 開發協力常設委員會에 參席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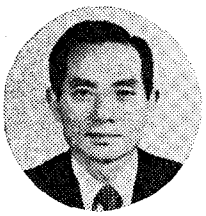

元 容 大
〈特許廳 抗告審判所長〉

① 머 리 말

工業所有權에 관한 WIPO開發協力常設委員會(WIPO Permanent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 to Industrial Property) 第5次會議가 지난 3月 10日부터 17日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國際勞動機構(ILO)빌딩 大會議室에서 開催되었다. 또한 이번 會議에서는 1977年 파리同盟執行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技術援助에 관한 特許協力條約(PCT) 中間委員會도 同時에 開催되었다.

同會議에 우리나라는 제네바代表部의 申貞燮 公使, 李萬用 商務官, 特許廳의 姜明求 國際擔當事務官 및 筆者가 代表團으로 參席하였다. 이번 機會를 통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國際的 動向을 살피는데 一助가 될 수 있도록 동 회의에서 討議된 議題를 中心으로 會議經過를 紹介하고자 한다.

② 會 議 概 況

이번 회의는 美·英·蘇 등 先進國과 브라질·이집트 등 開發途上國을 包含한 38個 會員國 代表와 필립핀·아르헨티나 등 7개 옵저버국 및 國際特許資料센터(INPADOC) 등 4個 國際機構에서 모두 80餘名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 첫날 議長에는 이라크代表 AL-Khanati씨가, 副議長에는 오스트리아대표 Fichte씨 및 蘇聯代表 Indzemtzev씨가 各各 選出되어 議事를 進行하였다.

또한 會議에서는 5個 國語(英·佛·스페인·아랍·소련)로 同時 通譯되었다.

③ 議 題 內 容

本 常設委員會는 WIPO Conferenee가 1973年 11月 27日에 採擇한 「공업소득권」에 관한 開發協力을 위한 WIPO常設프로그램」의 組織規則 第2條에 依據, 設置되었는데 每年 會議를 개최하여 WIPO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各種 支援事業의 計劃 樹立과 이의 執行過程을 檢討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11個 案件이 上程되었으며 各國 代表들간에 이에 대한 眞摯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1) 개발도상국의 國內發明 및 技術革新能力의 增進
(2) 特許資料의 技術情報化
(3) 國家 및 地域機關의 强化(各國 特許廳에 관한 調査)
(4) 개발도상국간의 協力
(5) 개발도상국을 위한 발명 및 Know-How에 관한 新모델法
(6) 개발도상국을 위한 商標 및 商號에 관한 새모델법
(7) 實施許諾契約
(8) 訓練, 地域會議, 세미나
(9) 法 制定, 機關 設立 및 關聯事項에 관한 諮問 및 支援
(10) 개발도상국을 위한 工業所有權用語集 發刊

(11) 개발을 위한 UN科學技術會議

本稿에서는 上記 議題中 가장 많은 關心을 集中시켰던 몇개 의제에 관한 討議內容에 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④ 開發途上國을 위한 發明 및 노우하우에 관한 新모델法

新모델法은 BIRPI(知的所有權國際事務局, WIPO의 前身)가 1965년에 이미 刊行한 바 있는 問題의 모델法(今年 3月 當廳이 國譯 刊行한 바 있음)에 代置코자 하는 것으로서 制定作業은 1974년부터 지금까지 6次에 걸친 作業團會議를 마치고 完成段階에 있으며 앞으로 두차례의 작업단회의를 거쳐 今年中으로 發刊할 計劃으로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이 모델法 中에 "技術移轉特許"(Transfer of Technology Patent, 以下 TTP라 함)라는 新種 特許制度의 採擇 問題가 부의되어 各國間에 열띤 論爭이 벌어졌다. 討議內容을 살펴보기 전에 TTP의 槪要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特徵 : 기술이전 및 先進國 發明의 國內實施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工業化 促進을 圖謀하기 위하여 構想된 制度로서 通常의 特許槪念 (특히 新規性基準)으로서는 그 許與가 不可能한 특허임

(2) 許與基準 : 통상특허가 特許對象인 발명이 出願時에 新規性과 進步性을 지녀야 함에 反하여 TTP는 對象發明의 신규성과 進步性判斷의 基準時點이 國內의 TTP出願時가 아니라 當該 發明의 外國特許 許與時임

(3) 出願 : 외국의 特許權所有者와 國內技術導入者가 共同으로 출원하여야 하며 兩者間에 技術導入契約을 締結하여야 함

(4) 其他 : 每年 特許權所有者는 國內實施를 證明하여야 하며 TTP의 本質은 국내실시에 있으므로 兩 所有者가 공동으로 當該 物品을 輸入하면 本 特許는 消滅되고 一方 所有者 單獨의 輸入은 他方 所有者에게 取消權을 賦與하게 됨

以上과 같은 技術移轉特許에 대한 각국의 意見은 다음과 같았다.

西獨 : 이 新種 特許制度가 특히 노우하우의 이전에 관하여 개발도상국의 必要性을 잘 反映하고 있으므로 TTP를 모델法에 包含시키는 것에 贊成하고 TTP는 노우하우 所有者側의 협력을 保障하고 있다는 점에서 紹介特許(1965 BIRPI 모델法 附錄 參照)에 比하여 長點을 갖고 있음.

이집트 : TTP를 모델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를 개발도상국에 勸告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일은 避해야 할 것임.

알제리 : 알제리의 國內法에는 TTP와 類似 한確認特許制度가 있어 많은 問題點이 있었음에 비추어反對함.

프랑스 : TTP는 개발도상국에서의 外國技術實施의 誘引 作用을 함으로써 기술이전의 基礎를 이룰 것임.

蘇聯 : 다음 세가지 理由로 모델法에 TTP를 포함시키는데 반대함.

가) TTP는 發明者에 대하여 이미 부여되었던 特權에 주어지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落後된 기술을 보호하는 結果가 될 것임.

나) TTP는 개발도상국의 利益에 反함. 즉 工場도 建設되지 않고 生產도 着手되지 아니한 狀態에서 TTP로 말미암아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

다) 소련 및 CMEA(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國家들은 TTP와 같은 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先進技術을 개발도상국에 提供하여 왔음.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外國企業에 특권을 주기를 願한다면 TTP 以外의 他 法的 手段을 利用해야 할 것임.

우간다 : TTP는 개발도상국에 노우하우의 이전을 통하여 매우 바람직한 效果를 가져올 것이므로 新모델法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함.

스페인 : 國內實施를 促進하고 수입을 禁止시킨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특허의 실시를 行政的으로 規制함으로써 惹起될 문제에 대한 보다 具體的인 硏究가 있어야 할 것임.

덴마크 : 모델法의 어떤 部分도 개발도상국에게 채택을 義務化시키는 것은 아니며 TTP는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것이므로 모델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음.

잠비아 : TTP는 개발도상국에 크게 有用한 제도임.

오스트리아 : TTP는 국내실시를 助長하고 노우하우의 이전이 保障되므로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것임.

브라질 : TTP를 直接 모델法에 포함시키는 것은 時期尙早이며 附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네덜란드 :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실시를 촉진함으로써 TTP는 共通의 利益과 成功을 가져올 것임.

印度 : TTP는 모델법에 포함시키기보다는 別個 刊行하는 것이 바람직함.

튀니지 : 반대함. 외국기술을 獨占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國內企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은 TTP보다 效果的인 手段을 이용할 수 있음. 즉 特定技術의 利用에 있어 利用獨占을 許可하거나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함.

스위스 : 프랑스의 의견에 찬성하고 모델法에 이를 포함시킨다해도 이를 國內法에 規定하느냐의 與否는 各國의 自由임.

이스라엘 : 브라질의 의견에 同意함.

美國 : TTP는 기술이전 및 國內製造를 조장할 것이며 모델法의 이용은 完全히 選擇的인 것이므로 TTP를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델法의 다른 부분도 이와같이 각각의 利點과 不利點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임.

세네갈 : 브라질의 의견에 贊同. TTP의 目的이 개발도상국의 工業化의 成功的 達成을 도우려는데 있기는 하나 그것이 실제에 있어 기술이전을 適切히 촉진시킬 수 있을 지는 不確實함.

스웨덴 : TTP는 개발도상국에 이득을 줄 것이며 스위스 의견에 동의. 또한 TTP를 모델法에서의 取扱與否 결정에 앞서 이의 長點이 愼重하게 硏究되어야 할 것임.

B그룹(先進國그룹)을 대표한 美國 : B그룹 國家들은 新모델法의 最終案에 대한 各國의 書面檢討書 提出을 원래의 마감기일인 4월 30일에서 3個月 延長코자 하였으나 本 모델法이 가능한 限 早速히 간행되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要請에 비추어 마감일까지 意見書를 제출토록 最善을 다할 것임.

開途國그룹을 대표한 브라질 : 新모델法의 조속한 出刊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에 重要性을 强調하고 上記 B그룹의 協調에 感謝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각국의 本 모델法에 대한 關心이 높고 특히 開發途上諸國에서의 이의 조속한 發刊必要性이 강조되었으며 技術移轉特許는 결국 新모델法의 一部로 되지 못하고 그 부록에 포함시키되 同 制度의 이점과 있을 수 있는 短點들을 함께 列擧하기로 결정하였다.

⑤ 實施許諾契約

WIPO事務局은 專門作業團 및 콘설턴트의 共同作業으로 「개발도상국의 필요성에 符合되는 工業所有權實施許諾契約과 技術移轉協定의 交涉 및 準備上의 法的側面에 관한 Guide」를 作成하고 1977年의 第4次 常設委員會에서 承認을 얻어 1977년 9월에 그 출간을 보았다. (이 Guide는 當廳의 資料提供으로 韓國貿易協會에서 4月에 國譯刊行한 바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이 Guide에 追加해서 「工業所有權實施許諾契約과 技術移轉協定의 檢討를 管掌하는 公務員을 위한 Manual」을 발간하는 문제 및 기술이전에 있어 開發途上國政府를 支援하기 위한 UN과의 협조 등의 문제에 관하여 토의되었다. 따라서 사무국이 各界로부터 받은 上記 Guide에 대한 激勵와 讚辭의 一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册은 개발도상국에서 實施許諾業務를 樹立하고 監督하는데 필요한 政策 및 契約案 明細를 검토한 것으로서는 내의 硏究에서 接한 것중 가장 嚴密한 것이다. 그것은 政策指導手段으로서는 물론 訓練用으로서도 매우 유용한 책이다……" (謀 先進國大學의 한 法學敎授)

"이 Guide는 기술의 이전과 개발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狀況을 改善하기 위한 現在의 努力에 重要한 寄與를 하였다. 그것은 또한 技術移轉協定의 교섭에 관한 複雜한 法的 側面을 理解하는데 매우 유용한 道具로서 제공하는 것이다."(UN機構의 한 職員)

"WIPO사무국은 이제 매우 유익한 사업을 完遂하였으며 이 사업은 工業所有權活動에 있어 새로운 局面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數年 後에는 실시허락에 관한 國際符號化의 기초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모 개발도상국의 特許廳長)

"이 책은 當廳이 企業體에 대하여 1978년에 실시할 敎育訓練事業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同 訓練코오스를 준비할 여러 講師가 背景資料로서 使用하기 위하여는 充分한 部數가 필요하다." (모 개발도상국의 公務員)

한편 회의에서 美國을 비롯한 12個國 代表들은 WIPO사무국의 上記 Guide發刊事業의 成功的 完成과 Guide의 卓越한 內容 및 이의 廣範圍 (특히 개발도상국에의) 한 配分에 대하여 致賀를 보냈으며 委員會는 이 Guide를 敎材로한 國家別 訓練코스를 作成하는 案을 1979年 豫算에 포함시킬 것도 아울러 승인하였다.

⑥ 訓練·地域會議·세미나

本 議題는 WIPO가 主管하여 每年 實施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其他 地域會議 등의 事業實績과 앞으로의 計劃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가 發言에 參加하여 同 議題에 대하여 각국의 至大한 關心을 表明하였으며 또한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參加國間의 敦篤한 友好的인 雰圍氣를 보여 주었다.

사무국은 보고를 통하여 훈련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實施過程을 說明하고 1977년의 실적과 1978년의 계획을 發表하였다. 今年 WIPO는 自體訓練프로그램으로 約 60名, 其他 硏究機關 또는 各國政府와의 共同主管下에 約 30名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나라도 WIPO에 加入하게 된다면 이러한 訓練參加機會가 크게 열릴 것이며 아울러 가장 現實的인 이점이 될 것이다.

토의에서 먼저 韓國을 비롯한 29個國 代表들은 각각의 발언을 통하여 WIPO 訓練計劃이 개발도상국의 立場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훈련프로그램의 範圍가 漸次 擴大되어 가는데 대한 사무국의 노력과 功勞를 致賀하였다.

西獨, 英國을 비롯한 13個 先進諸國은 WIPO훈련계획에 계속 寄與할 뜻을 밝히고 訓練生을 收容할 것을 提議하였다.

특히 西獨 및 프랑스는 今年 各各 5名의 훈련생에 대한 諸費用을, 또한 英國은 4名分의 비용을 負擔할 것을 밝혔으며 이스라엘도 2명을 수용할 뜻을 제의하였다.

한편 韓國·필리핀·우간다 등 지금까지의 훈련계획의 受惠國이었던 國家의 代表들은 各各 事務局 및 訓練提供國에 대하여 感謝를 表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은 한결같이 自國民에 보다 많은 訓練機會를 제공해 줄 것을 要請하였다. 또한 각국은 現行 訓練制度에 대한 改善方案 즉 訓練內容의 再編成, 管理의 改善, 訓練生들에 대한 事後管理 등을 提示하였으며 그중 알제리 대표는 훈련계획의 改善方案으로서 다음 세가지 案을 제의하여 注目을 끌었다.

(1) 大學敎育을 받지 않은 中間管理層 公務員들을 위한 課程의 設置
(2) 海外派遣訓練이 아닌 現地 또는 地域水準에서의 訓練課程의 설치
(3) 개발도상국의 各 大學에서의 工業所有權敎育을 補完改善하기 위한 敎育實態調査 및 敎授陣에 대한 훈련

또한 INPADOC 대표는 今後 特許資料關係訓練事業에 積極的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⑦ 開發途上國을 위한 工業所有權用語集發刊

第3次 常設委員會는 工業所有權用語集의 發刊事業을 常設프로그램사업에 포함시키도록 사무국에 勸告하여 4次會議에서는 그 執行計劃을 確定하고 이번 회의에 그 試案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시안은 約 400個에 達하는 공업소유권용어를 4個國語(英·佛·스페인·아랍)로서 整理하였으며 同 資料作成에는 파리協約, 特許協力條約(PCT) 및 商標登錄條約(TRT)이 基礎資料로서 이용되었다. 이 用語集은 1979년까지 완성하여 발간키로 하였으며 1979년의 6次會議에는 工業所有權 Manual의 시안도 작성, 提出하도록 사무국에 권고하였다.

토의에서 소련 및 스웨덴대표는 各各 露語·스웨덴語版을 自國에서 곧 준비할 意思를 밝힘으로써 同 用語集에 대한 關心을 보였다.

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출한 이 사업의 向後計劃을 승인하고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⑧ 結 論

이번 회의에서 토의된 主要 議題를 대충 살펴보았거니와 同 委員會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WIPO의 사업을 總括하는 위원회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WIPO에 가입한 후에도 가장 관심을 갖고 參與해야할 기구의 하나이며 현재 이 위원회에서 進行中인 諸事業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各種 事業들이 推進될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이 위원회의 사업의 所產인 各種 資料의 國內紹介는 가장 필요하고도 切實한 문제로서 特許廳은 물론 特許協會 및 辨理士會의 積極的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會議期間中 우리代表團은 WIPO사무국을 訪問하여 事務總長 Bogsch博士를 비롯한 事務次長 및 擔當局長 등과 實務會合을 갖고 韓國의 WIPO加入問題, WIPO와의 協力問題 및 工業所有權制度의 最近의 國際動向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訓練生 派遣, 專門家 招請 등을 요청한데 대하여 好意的인 支援 約束을 받았으며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각국의 대표들과도 當廳의 發足 以後 當廳에 제공해 준 여러가지 협조에 대하여 謝意를 표하였다.

또한 이번 WIPO事務局과의 協議事項에 대한 後續措置로서 最近 WIPO事務總長은 금년 10월 10일 韓國에 WIPO首席事務次長 Pfanner씨, 前 英國特許廳長 Armitage씨, (現 유럽商標制度改革準備作業團議長) 및 前 西獨特許廳長 Heartel博士(現 EPO行政審議會 名譽議長) 등의 派遣計劃을 通報하고 當廳이 計劃中인 공업소유권세미나에도 이들이 참가할 것임을 알려왔다. 파견되는 전문가들이 모두 國際工業所有權界의 主要 人士들이며 이들이 來韓하여 특허청의 組織問題, 情報體制의 樹立 및 企業에서의 特許專擔部署의 組織問題 등에 대하여 의견을 交換할 것을 제의해 온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10月 中旬頃에 開催 豫定인 세미나에는 물론 韓國工業所有權制度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期待되는 바이다. ♣

社會不條理를 淨化하여 總力安保 이룩하자!